

디지털재화수출기업의 수출위험인식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Export Risks Identification of Exporting Firms of Digital Goods

강현재(Hyun-Jae Kang)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국제통상학부 시간강사(주저자)

배정환(Jung-Han Bae)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국제통상학부 교수(교신저자)

목 차

I. 서 론	V. 결 론
II. 디지털재화의 수출위험	참고문헌
III.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Abstract
IV. 가설검증 결과	

Abstract

In 1990s, both development of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would make new products such as digital goods. Recently, digital goods composed of softwares, digital contents, and digital services have grown up rapidly in the world market.

Characteristics of goods and transaction forms in the international trade of digital goods is different from those of traditional goods. Thus, this difference would appear a new risk that did not exist in the international trade of traditional goods.

Identification and confirmation about unique export risks of digital goods would be necessary to the increase of export of digital goods needs; however, in spite of the importance, very few studies have been based on the export risks of digital goods particularly in research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export risk management and export performance. This study classifies the types of export risks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both management and identification of export risks.

Key Words : Digital Goods, Export Risk

I. 서 론

국제무역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거래이다. 이와 같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국제무역은 국내거래와 비교하여 장거리·장시간의 운송이 필요하고, 경제제도, 법률, 상관습, 통화 등의 무역환경이 상이하며, 상대방의 신용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무역업자들은 운송 위험, 환위험, 신용위험, 비상위험 등의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적 시장조사,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 보험부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러한 위험들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1990년대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경제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고, 디지털경제의 출현은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전통적 상품무역이 아닌 전자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디지털재화라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기존의 유형재인 '물리적재화의 디지털화'¹⁾를 파생시켰으며 이러한 디지털재화의 등장은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로 대변되는 재화의 양분법을 모호하게 만들게 되었다.

디지털재화란 디지털 형태로 생산, 유통, 소비되고 저장까지 할 수 있으며 기존에 생산된 재화를 디지털화 시킨 모든 것, 즉 컴퓨터 네트워크상으로 교환될 수 있는 디지털로 된 모든 정보, 서비스 및 재화를 말한다.

최근 들어 소프트웨어, 게임·음악 등과 같은 디지털콘텐츠와 e-mail 서비스·온라인 주식거래와 같은 디지털서비스로 분류되는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재화는 생산과정에서 천연자원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요소의 사용 없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차세대 성장 및 수출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재화의 수출은 재화의 특성이나 거래방식이 기존의 전통적재화의 특성이나 거래방식과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되어 오던 일반 상품무역에서 발생하는 수출위험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수출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재화의 수출기업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수출위험은 물론 디지털재화 고유의 수출위험과 관련하여서도 그 중요성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하고 대비하여야 수출증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재화산업을 우리나라의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디지털재화 수출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출위험의 인식과 함께 적절한 수출위험관리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디지털재화의 수출위험과 관련된 기존연구로는 안병수의 “디지털물 국제거래의 리스크관리방안에 관한 연구”²⁾가 있으며,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와 관련된 연구로는 박문서, “디지털상품의 전자상

1) 과거 아날로그 환경에서 물리적 재화로 분류되던 신문, 소프트웨어, CD 등이 On-line을 통해 디지털 형태로 제공됨으로써 전통적 재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물리적 실체(Physical Identity) 및 물리적 운송수단을 상실하고 있으며, 초고속 통신망의 급속한 보급은 상당수의 물품을 디지털화 시키고 있다.

이호건·윤영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 디지털 재화의 분류 동향과 전망”, 「국제상학」 제17권 제3호, 2002. 12. p.267

거래 활성화 방안³⁾, 임성철의 “디지털물의 국제거래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⁴⁾, 한병완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거래에 관한 연구⁵⁾ 등이 있다.

한편, 수출위험의 인식 및 확정과 관련한 연구로는 구종순의 "수출위험의 확정에 관한 연구⁶⁾, 이제현의 “한국수출기업의 수출위험관리와 수출보험활용에 관한 실증연구⁷⁾ 등이 있으나 디지털재화 고유의 수출위험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디지털재화의 고유한 성격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디지털재화의 수출위험을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라 우리나라의 디지털재화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업특성, 수출거래특성 및 품목특성에 따른 수출위험에 관한 인식수준의 차이를 파악하여 디지털재화를 수출하는 기업들의 위험인식수준실태를 분석하고 위험의 특성에 따른 관리방안의 도입인식을 제고시키는데 기여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디지털재화의 수출위험

전통적재화의 수출위험의 종류와 관리방법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디지털재화에 대한 수출위험의 종류와 그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디지털재화의 수출위험의 종류 및 확정과 관련하여 안병수(2005)⁸⁾의 연구에서는 디지털재화의 거래위험을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i)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성공하면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높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지만, 성공하지 못할 경우 큰 손실을 얻을 수 있다는 비즈니스리스크(원칙적으로 경영위험에 속함), ii) 시스템의 안정성에 발생된 문제로 인한 복구비용 및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안전리스크, iii) 디지털재화의 특성상 반품의 의미가 없고 신용장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신용리스크, iv) 인터넷의 익명성과 순간성 때문에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순식간에 퍼짐으로써 발생하는 명성리스크, v)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과 관련된 법률리스크, vi) 표준화 등의 변화로 인해 시장자체의 변화가 생기는 시장리스크 등으로 정의하고 분류하였다.

2) 안병수, “디지털물 국제거래의 리스크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Digital Goods의 국제거래,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무역상무학회 산학협력 공개세미나, 2005.12.

3) 박문서, “디지털상품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통상정보연구」 제3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5.

4) 임성철, “디지털물의 국제거래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5.

5) 한병완,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거래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5권 제3호, 2005.

6) 구종순, “수출위험의 확정에 관한 연구”, 「경영논총」 제VII호, 충남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1992.

7) 이제현, “한국수출기업의 수출위험관리와 수출보험활용에 관한 실증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7.

8) 안병수, 전제논문, pp.115~122.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발생의 빈도와 손실의 발생가능성에 따라 분류한 뒤 수출보험이 아닌 일반 사보험을 등을 통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에 따른 위험의 경우 실제 디지털재화에 국한된 위험이 아니라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전통적재화의 경우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 주로 기업 대 소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디지털재화의 수출위험이라고 일반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재화의 수출위험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위험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1. 지적재산권위험

지적재산권위험이란 수입기업, 최종이용자, 권한 없는 제3자 등에 의한 디지털재화의 위조, 변조, 불법유통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디지털재화는 본질적 특성인 가변형성 및 재생산성으로 인하여 제품의 위조·변조와 복제가 용이하고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원본과의 차이를 전혀 가지지 못하게 되는 특성이 있다. 소프트웨어나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복제이용이 가능하고, 복제품과 원본의 품질 또한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다. 또한 정보재는 복제생산의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깝고 추가적인 변형에 따른 한계비용이 미미하기 때문에 정보재 원본에 대한 수요는 공공재와 같은 비경합성을 보이게 된다. 이로 인하여 생산비용에 근거한 가격인식이 형성되지 않고 따라서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려는 불법복제를 통한 무임승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침해는 대표적으로 불법복제가 있으며, 그 외에도 현지 유통업자에 의한 제품 정보의 무단 유출, 유사제품의 제작 등과 같은 형태로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2005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조사⁹⁾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대부분의 기업이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으나 해당국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고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승소가 쉽지 않다.

따라서 디지털재화의 수출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위험은 위험이 발생하는 빈도도 높고 손실의 강도도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특성이 있다.

2. 계약위험

계약위험이란 수입상 또는 최종이용자의 수량, 장소, 사용자 등 계약사항 위반에 의한 손실발생 가

9)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해외 디지털콘텐츠 피해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결과 보고서」, 2006. 2.

능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위험은 수출기업이 품질, 수량, 납기 등과 같은 계약내용을 위반함으로써 수입기업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재화의 수출에 있어서 일반적 매매계약과는 달리 라이선스계약을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계약내용준수에 관한 책임이 수출상에게서 수입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내용 위반의 당사자는 수출상이 아니라 수입상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의 경우 해당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에 속하며, 라이선스계약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만이 이전되는 계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계약에서의 사용권에는 수량, 장소, 사용자 등에 대한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계약의 당사자가 이러한 사항에 합의 했다면 그러한 합의를 준수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위험의 형태는 라이선시(licensee)의 계약위반, 최종이용자(소비자)의 계약위반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디지털재화의 수출에 있어서 발생빈도도 많고 손실의 강도도 크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되어야 하는 위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3. 법률위험

법률위험이란 수출국, 수입국 및 제3국의 법률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등의 손실발생가능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위험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국의 수출규정 및 수출금지와 관련된 법률의 위반을 들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재화 중 소프트웨어의 수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한 기술유출방지법 등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의 매각이전 시 정부승인을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부가 정하고 있는 전략물자수출통제목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은 수출대상국가의 지정이나 품목의 선정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입국의 법률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들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패키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네트워크 외부성,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의 특성은 소프트웨어산업내에서 자연독점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OS 패키지에서 MS사의 경우처럼 특정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많을수록 그 제품의 소비자에게 주는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먼저 시장을 선점할 경우 그 제품이 제공하는 표준이 사실상의 표준으로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독점금지 및 공정경쟁과 관련한 수입국의 법률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셋째, 제3국의 법률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등의 손실을 들 수 있다.

디지털재화의 거래는 일반적 전자상거래와 마찬가지로 시간-공간적 제약을 인터넷 또는 기타의 통

신망을 이용하여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래당사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국경을 넘는 것과 동일한 행위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국내법이 아닌 외국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거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출기업은 수출국과 수입국의 법률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나 제3국의 법률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제3국의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4. 전송위험

전송위험이란 On-line인도에 있어서 전송과정에서의 전송실패 및 제품유출을 통한 손실발생가능성이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송위험은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네트워크의 오류 또는 불안정으로 인한 전송실패를 들 수 있다. 디지털재화의 인도에 있어 국가 간 전송을 하게 될 경우 해당국가의 정보통신 인프라 수준에 따라 이러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이 전송과정 중 발생하는 오류에 따른 위험은 거래당사자나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혹은 제3자의 작위나 부작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이 아닌 정보통신망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므로 전통적 재화와 비교하여 보면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seas)에 해당한다.¹⁰⁾

두 번째, 해킹 또는 불법행위를 통한 전송과정 또는 다운로드과정에서의 제품유출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통한 제품유출은 인도방법을 자사 홈페이지나 기타 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Download)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 전송에는 성공하였으나 구매자가 전송실패를 이유로 매도인의 계약위반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송위험의 경우 재전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전송위험이 가지는 실질적인 문제는 전송을 받는 당사자의 경우 전송실패를 이유로 들어 디지털재화를 인도받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수출기업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전송실패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러한 전송실패에 대한 책임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회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출기업 본인에게 있는 것인지도 판단하기 어렵게 된다.

만약 전송받은 상대방이 전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송실패를 들어 계약의 불이행을 주장한다면 실질적인 반품도 불가능 할 뿐 아니라 반품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제품은 이미 상대방의 사용 하에 놓여 있게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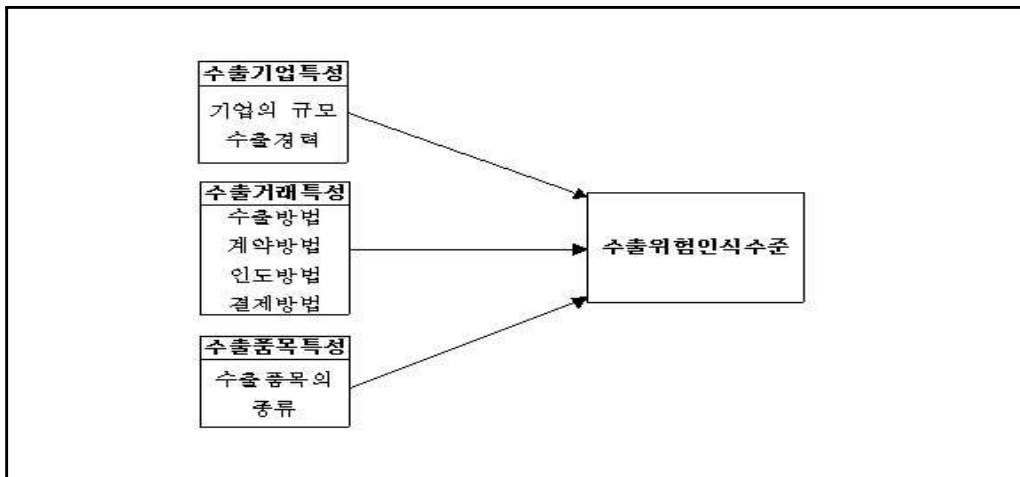
이러한 전송위험은 전통적재화의 운송위험에 해당하는 것이나 운송위험은 대부분 해상보험 등을 통해 관리될 수 있는 반면 전송위험은 관리를 위한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

10) 임성철, 전제논문, p.85.

Ⅲ.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1. 연구모형

본 절에서는 디지털재화 수출기업의 수출위험인식에 관한 실증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의 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그림 3-1>의 연구모형은 수출위험의 인식수준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기업의 규모, 수출경력, 직접수출비중으로 구분되는 수출기업특성, 수출방법, 계약방법, 인도방법, 결제방법 등으로 구분되는 수출거래특성,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서비스로 구분되는 수출품목특성으로 구성된 수출위험의 인식특성 변수들과 수출위험의 인식수준과의 관계를 규명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여러 연구들에서도 사용한 방법으로서 수출기업의 특성이나 수출방법, 수출품목의 차이에 따라 수출위험에 대한 인식수준에 유의한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2. 가설의 설정

1) 수출기업특성과 수출위험인식수준

Cooper and Kleinschmidt¹¹⁾는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업의 규모, 수출경험, 수출품의

종류와 같은 기업특성을 제시하였고, Christensen, Rocha and Gertner¹²⁾는 수출성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업특성, 수출관리수단, 관리자의 인식 등이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Bilkey and Tesar¹³⁾은 그들의 연구를 통해 수출단계가 진전될수록 수출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인식도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Tesar¹⁴⁾는 수출규모가 큰 기업보다 오히려 수출규모가 적은 기업이 수출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을 발견하여 앞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론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기업의 규모와 수출경력은 수출위험의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H1-1]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수출위험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 것이다.

[H1-2] 수출경력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수출위험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 것이다.

2) 수출거래특성과 위험인식수준

개별수출기업의 수출거래특성은 대표적으로 수출과 관련된 여러 행위인 수출방법, 계약의 종류, 제품의 인도방법, 대금의 결제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수출기업은 이러한 수출행위 중 어떠한 종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노출되는 수출위험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고, 손실의 발생 가능성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첫째, 수출방법의 경우, 수출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수출방법은 크게 직접수출과 간접수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접수출방식이란 국내 소재의 중개상을 거치지 않고 수출업체 자신이 직접 외국의 유통업자나 에이전트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현지에 자사의 판매지사나 법인의 설립을 통해 수출 물품을 직접 유통시키는 것을 말한다. 수출기업은 직접수출을 선택할 경우 판매계약, 통관, 선적 등 고도의 수출업무관리에 관한 능력을 요구받게 된다. 따라서 수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수출기업자신이 모두 부담하게 되므로 간접수출과 비교하여 더 높은 위험부담이 따르게 되므로 수출방법의 차이에 따라 수출위험의 인식수준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계약의 종류와 관련하여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는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으로 체결될 수도 있으며, 라이선스계약이나 리스계약으로도 체결될 수 있다. UCC 제2-106조 제(1)항에서

11) Robert G. Copper and Elko J. Kleinschmidt, "The Impact of Export Strategy on Export Sales Perform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spring, 1985, p.38.

12) Carl H. Christensen, Angela da Rocha and Rosane Kerbel Gertner,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Factors Influencing Exporting Success of Brazilian Firm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987. pp.61~68.

13) Warren J. Bilkey and George Tesar, "The Export Behavior of Small-Sized Wisconsin Manufacturing Firm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977. pp.93~95.

14) G. Tesar, "Empirical Study of Export Operations Among Small and Medium Sized Manufacturing Firms",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1975 ; Warren J. Bilkey, p.37 ; 김용호, 전계논문, p.84.

“매매”라 함은 대금을 대가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의 매매는 그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을 영구히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더 이상 매도인은 당해 유체물의 거래에 관여할 수 없다. 반면에 라이선스계약이란 i) 정보의 제한적 또는 조건적 이전을 정하거나, ii) 제한된 “계약적 권리”¹⁵⁾를 부여하거나 정보의 제한적인 사용을 허용하는 계약을 말한다.¹⁶⁾ 따라서 매매계약의 경우 수출기업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되기 전까지의 일반적인 수출위험과 신용위험 등에 노출되게 된다. 그러나 라이선스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수출위험 이외에도 지적재산권의 침해, 라이선스계약내용의 위반등과 같은 추가적 위험에 노출되게 되므로 계약의 종류에 따라 위험의 인식수준이 차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셋째, 계약물품의 인도방법과 관련하여 디지털재화의 경우 제품을 CD 또는 기타 저장용기에 담아 해상운송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의 Off-line 인도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인터넷이나 기타 네트워크를 통하여 복제물을 전송할 수 있는 On-line 인도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도의 온라인화는 기존의 유형재의 인도와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기존 물품은 독립성을 보유하므로 인도는 점유의 이전을 본질로 하는 것이지만, 디지털재화의 전자적 전달의 실질은 복제(reproduction)이다. 복제는 점유의 이전이 아니라 점유의 병존적 생성이므로 유형재의 인도와는 구별된다.¹⁷⁾

디지털재화의 인도에 있어 기존의 방법인 Off-line 인도의 경우 전통적인 운송위험 등에 노출되게 되지만, On-line 인도의 경우 전송과정의 오류발생, 권한없는 제3자의 도용, 컴퓨터 바이러스나 해킹 등을 통한 제품의 유출과 같은 위험에도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인도의 방법에 따라 수출위험의 인식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수출거래특성으로 결제방법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제방법은 크게 신용장방식과 무신용장방식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신용장방식의 경우 수출대금의 지급을 은행이 보증하지만 무신용장방식은 은행은 단순히 어음에 대한 추심만 대행할 뿐 수출대금지급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입기업의 신용이 좋지 않을 경우 수출대금회수불능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신용장방식에서는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어음의 지급인은 신용장 발행은행 또는 발행은행이 지정한 제3의 은행이 된다. 그러나 무신용장방식에서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어음은 지급인이 수입업자로 되어 있다. 즉 신용장방식에서는 발행된 환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을 발행은행이 하지만 무신용장방식에서는 수입업자가 하기 때문에 지급상의 모든 책임은 수입업자에게 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신용장방식이 수출기업에게 좀 더 유리한 방식이므로 수출위험에 있어서도 무신용장방식보다 더 적은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결제방법이 차이에 따라 수출위험에 대한 인식수준도 차이를 보일 것이다.

15) “계약적 권리”란 라이선스이용자가 특정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약속을 의미한다.

16) UCITA Art. 102(a)(41)

17) 오병철, 「디지털정보계약법」; 임성철, 전계논문, pp.74~75.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해 볼 수 있다.

- [H2-1] 수출위험인식수준은 선택하는 수출방법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보일 것이다.
- [H2-2] 수출위험인식수준은 체결되는 계약의 종류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보일 것이다.
- [H2-3] 수출위험인식수준은 계약물품의 인도방법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보일 것이다.
- [H2-4] 수출위험인식수준은 수출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보일 것이다.

3) 수출품목특성과 수출위험인식수준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재화의 종류를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서비스로 분류해 보았다.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각 재화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그 특성상 오디오/비주얼 및 텍스트상품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주로 지적재산권위험과 복제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 운송방식 또한 On-line 전송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전송위험에 특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디지털서비스의 형태는 정보제공과 같은 포털서비스와 E-Mail등의 접속계약을 주 형태로 하는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법률위험, 계약위험 등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소프트웨어의 경우 개발계약의 경우 계약위험에 다른 종류의 디지털재화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전략물자와 관련한 수출통제와 독점금지 등과 같은 법률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다른 재화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CD의 형태로 수출될 경우 복제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디지털재화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 [H3] 기업의 수출위험인식수준은 수출품목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보일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항목 구성

조작적 정의는 연구에서 선택된 개념, 즉 구성을 실제현상에서 측정 가능하도록 관찰 가능한 형태로 정의해 놓은 것으로 조작적 정의를 통해 변수를 측정하고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한다. 본 논문에서 수행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의 <표 3-1>와 같다.

〈표 3-1〉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성개념	특성	변수	측정문항	정의
기업특성	수출 기업 특성	기업규모 수출경력	A-1 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 내에서 기업의 구성원의 크기 수출거래기간
	수출 거래 특성	수출방법 계약방법 인도방법 결제방법	A-8 A-10 A-11 A-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사용하는 수출형태 체결되는 계약의 종류 사용하는 제품인도의 방법 수출대금결제방법
	수출 품목 특성	수출품목의 종류	A-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서비스 등 수출하는 물품의 종류
수출위험 인식수준	지적재산권위험 계약위험 법률위험 전송위험		B-1~ B-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재산권위험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정도 거래상대방 또는 최종이용자의 계약내용 위반가능성에 대한 고려정도 수입국 또는 제3국의 법률저촉 가능성 On-line 인도 시 제품의 인도실패 가능성에 대한 고려정도

IV. 가설검증 결과

1. 표본의 선정과 자료수집

설문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배포되었다. 우선 오프라인 방식의 경우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울 COEX에서 개최된 'SOFTEXPO 2006 & DCF 2006'에 참가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배포되었으며, 기타업체의 경우 전화 협조요청 및 직접방문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온라인 방식의 경우 홈페이지 및 이메일이 비교적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지의 이메일 전송을 통해 배포하였다. 설문은 2006년 11월 30일부터 2007년 3월 21일까지 실시되었다.

오프라인을 통한 설문에서 87개의 응답이 회수되었으며, 온라인을 통한 설문에서 51개의 응답이 회수되었다. 그러나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112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투입되었다. (응답률 34.6%, 유효응답률 28.0%)

2. 응답기업의 일반적 특성

응답기업의 수출품 형태를 보면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47.3%, 컴퓨터관련서비스가 21.4%, 디지털콘텐츠가 22.3%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구조 통계를 살펴보면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28.0%, 컴퓨터관련서비스가 65.6%, 디지털콘텐츠 개발이 5.1%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실제 응답기업의 분포와 통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표본선정 시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의 경우 HS Code로 수출업체 검색이 가능하지만, 컴퓨터관련서비스의 경우 HS Code가 없기 때문에 검색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패키지 소프트웨어업체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디지털콘텐츠의 경우도 설문지를 배부한 전시회의 참가업체가 대부분 디지털콘텐츠 개발 업체이던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1〉 응답기업의 주요수출품목

구분	빈도수(업체수)	구성비(%)
패키지 소프트웨어	53	47.3
내장용 소프트웨어	9	8.0
컴퓨터 관련 서비스	24	21.4
디지털콘텐츠 개발	25	22.3
DB제작, 검색대행	1	0.9
합계	112	100.0

〈표 4-2〉에서 응답기업의 종업원 수를 보면 10명 이하의 기업이 13.4%, 11~50명이 41.1%, 51~100명이 18.8%, 101~300명이 21.4%, 301명 이상이 5.4%를 차지하고 있어 디지털재화산업의 경우 중소규모의 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2〉 응답기업의 종업원수

구분	빈도수(업체수)	구성비(%)
10명 이하	15	13.4
11~50명	46	41.1
51~100명	21	18.8
101~300명	24	21.4
301명 이상	6	5.4
합계	112	100.0

한편 조사대상기업의 수출경험은 3~5년 미만인 업체가 38.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년 이하가 6.3%, 1년~3년 미만이 26.8%, 5년~10년 미만이 27.7%, 10년 이상이 0.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응답기업의 수출경력

구분	빈도수(업체수)	구성비(%)
1년 이하	7	6.3
1년~3년 미만	30	26.8
3년~5년 미만	43	38.4
5년~10년 미만	31	27.7
10년 이상	1	0.9
합계	112	100.0

3.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1) 신뢰성 분석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수의 측정항목에 대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구성개념의 신뢰도가 0.6 이상이면 내적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본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본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은 모두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각 변수들 간의 측정 항목수 및 Cronbach's Alpha 값은 <표 4-4>에 나타나 있다.

〈표 4-4〉 연구변수의 신뢰성 분석

구성	연구변수	문항	Cronbach's Alpha
수출위험인식수준	지적재산권위험	3	0.843
	계약위험	3	0.837
	법률위험	3	0.865
	전송위험	2	0.826

2) 타당성 분석

요인분석결과 다음의 <표 4-5>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설문문항이 8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항목들 모두에서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s)이 해당요인에 대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도출한 특성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5> 설문항목의 요인구조

구성	변수	측정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수출위험 인식수준	지적재산권위험	B-1	.783	-	-	-
		B-2	.859	-	-	-
		B-3	.884	-	-	-
	계약위험	B-4	-	.685	-	-
		B-5	-	.884	-	-
		B-6	-	.803	-	-
	법률위험	B-7	-	-	.822	-
		B-8	-	-	.761	-
		B-9	-	-	.740	-
	전송위험	B-10	-	-	-	.908
		B-11	-	-	-	.846
eigen value			1.840	1.799	2.838	1.113

4.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모형에서 가설검증을 위해서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모형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개별수출기업의 기업특성, 수출거래특성, 수출품목특성과 수출위험인식수준과의 유의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1) 수출기업 특성에 따른 수출위험 인식수준

(1) 기업규모에 따른 수출위험 인식수준

기업규모에 따른 수출위험 인식수준을 알아본 결과, 비상위험은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계약위험과 법률위험은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지적재산권위험은 유의

수준 10%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적재산권위험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위험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위험과 환위험은 기업규모가 51-100명인 경우가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약위험은 301명 이상인 경우에 위험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수출위험인식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위험인식수준이 낮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수출위험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H1-1]은 채택되었다.

〈표 4-6〉 기업규모에 따른 수출위험 인식수준

인식수준		기업규모	10명이하 (n=15)	11-50명 (n=46)	51-100명 (n=21)	101-300명 (n=24)	301명이상 (n=6)	F-ratio p-value	MRT
지적재산권위험	mean (s.d.)		4.0222 .8771	4.3333 .7370	4.3651 .6904	4.6250 .5758	4.8333 .1826	2.389 .055c	I-IVc
계약위험	mean (s.d.)		3.4444 .6506	3.7681 .6845	4.0952 .9437	3.6944 .6804	4.3333 .5164	2.707 .034b	I-III Vc
법률위험	mean (s.d.)		3.1778 .4340	3.1812 .9288	3.8254 .8070	3.5417 .8094	3.7778 .3443	3.077 .019b	II-IIIb
전송위험	mean (s.d.)		2.2667 1.0328	2.8370 1.1108	3.1429 .9892	3.0000 1.3105	3.1667 .2582	1.649 .167	

a: p<.01, b: p<.05, c: p<.10인 경우에 유의적임,
MRT: 집단간 유의적인 차이 관계를 제시(Tukey 방식을 적용), 로마자는 집단간 차이 표시임.

(2) 수출경력에 따른 수출위험 인식수준

수출경력에 따른 수출위험인식수준을 분석한 결과, 지적재산권위험은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법률위험은 유의수준 5% 수준에서, 비상위험은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적재산권위험과 법률위험은 수출경력이 많을수록 위험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수출위험인식수준과 관련하여 수출경력이 오래될수록 위험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출경력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수출위험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가설 [H1-2]는 채택되었다.

〈표 4-7〉 수출경력에 따른 수출위험 인식수준

인식수준 \ 수출경력		1년이하 (n=7)	1-3년미만 (n=30)	3-5년미만 (n=43)	5-10년미만 (n=31)	F-ratio p-value	MRT
지적재산권위험	mean (s.d.)	3.4286 1.0313	4.2778 .7585	4.4496 .6662	4.6129 .4799	6.263 .001a	I - IIb I - IIIIVa
계약위험	mean (s.d.)	3.7143 .5909	3.7111 .9253	3.8217 .7536	3.8495 .5953	.220 .882	
법률위험	mean (s.d.)	2.9048 .4600	3.1667 1.0010	3.4574 .7699	3.6667 .7404	2.835 .042b	II-IVc
전송위험	mean (s.d.)	2.8571 1.2150	2.9667 1.3705	2.7674 .9534	2.9677 1.0562	.267 .849	

a: p<.01, b: p<.05, c: p<.10인 경우에 유의적임,
MRT: 집단간 유의적인 차이 관계를 제시(Tukey 방식을 적용), 로마자는 집단간 차이 표시임

2) 수출거래 특성에 따른 수출위험 인식수준

(1) 수출방법에 따른 수출위험 인식수준

수출방법에 따른 수출위험 인식수준을 알아본 결과, 계약위험은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위험은 직접수출, 해외지사/자회사를 통한 수출, 국내 무역대행업자를 통한 수출 등에서 전반적으로 위험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수출위험인식수준을 볼 때 직접수출의 경우 지적재산권위험, 계약위험등에서 높은 인식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지유통업자를 통한 수출의 경우 낮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4가지의 위험 중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위험은 계약위험에 불과하고 나머지 위험들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의 수출위험인식수준은 선택하는 수출방법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H2-1]은 기각되었다.

〈표 4-8〉 수출방법에 따른 수출위험 인식수준

인식수준 \ 수출방법		(1) (n=57)	(2) (n=30)	(3) (n=21)	(4) (n=7)	F-ratio p-value	MRT
지적재산권위험	mean (s.d.)	4.4386 .7693	4.4111 .6232	4.2857 .7171	4.0000 .7201	.630 .597	
계약위험	mean (s.d.)	3.9064 .5968	3.9000 .7226	3.3492 1.0026	3.9167 .8333	3.311 .023b	I II-IIIb

법률위험	mean (s.d.)	3.4561 .8811	3.5333 .7197	3.0794 .8226	3.5833 1.0319	1.433 .237	
전송위험	mean (s.d.)	2.9211 1.0035	2.7167 1.0313	2.7619 1.4716	3.8750 .8539	1.394 .249	

a: p<.01, b: p<.05, c: p<.10인 경우에 유의적임,

MRT: 집단간 유의적인 차이 관계를 제시(Tukey 방식을 적용), 로마자는 집단간 차이 표시임

(1)직접수출, (2)해외지사/자회사를 통한 수출, (3)현지 유통업자를 통한 수출, (4)무역대행업자를 통한 수출

(2) 계약방법에 따른 수출위험 인식수준

계약방법에 따른 수출위험 인식수준을 알아본 결과, 계약위험, 법률위험, 전송위험은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위험과 신용위험에 있어서는 개발계약의 경우에 위험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위험, 법률위험, 전송위험, 비상위험의 경우에는 라이선스계약의 경우 위험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발계약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직접방문을 통한 인도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계약은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계약당 사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수입상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수입상의 계약내용위반과 일반적인 신용위험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라이선스계약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고 단지 사용권만 허여되는 계약이므로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자의 불법유통 및 위조, 변조 등의 지적재산권위험에 많이 노출될 것이라는 기존의 예측을 지지하고 있는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4가지의 수출위험 중 3가지의 위험에서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기업의 수출위험인식수준은 체결되는 계약종류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H2-2]는 채택되었다.

<표 4-9> 계약방법에 따른 수출위험인식수준

계약방법		매매계약 (n=30)	라이선스계약 (n=64)	개발계약 (n=17)	F-ratio p-value	MRT
인식수준						
지적재산권위험	mean (s.d.)	4.2222 .6333	4.4948 .6200	4.2353 1.0914	1.914 .153	
계약위험	mean (s.d.)	3.3444 .7504	3.9271 .6836	4.0980 .6949	8.851 .000a	I - II IIIa
법률위험	mean (s.d.)	2.9667 .7237	3.6094 .8198	3.4314 .8721	6.545 .002a	I - II a

전송위험	mean (s.d.)	2.3167 1.1408	3.1406 .9656	2.8824 1.2934	6.076 .003a	I - IIa
------	----------------	------------------	-----------------	------------------	----------------	---------

a: p<.01, b: p<.05, c: p<.10인 경우에 유의적임,
MRT: 집단간 유의적인 차이 관계를 제시(Tukey 방식을 적용), 로마자는 집단간 차이 표시임

(3) 인도방법에 따른 수출위험 인식수준

본 결과에서 인도방법은 수출위험의 인식수준에 별다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기업의 수출위험인식수준은 계약물품의 인도방법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H2-3]은 기각되었다.

<표 4-10> 인도방법에 따른 수출위험 인식수준

인도방법		(1) (n=50)	(2) (n=13)	(3) (n=38)	(4) (n=5)	(5) (n=6)	F-ratio p-value	MRT
지적재산권위험	mean	4.4600	4.2051	4.3860	4.4000	4.1667	.470	
	(s.d.)	.7027	1.1348	.5343	.8300	.8097	.758	
계약위험	mean	3.6467	3.8462	3.9912	4.1333	3.5000	1.676	
	(s.d.)	.8368	.6887	.5284	1.3250	.5477	.161	
법률위험	mean	3.2467	3.4615	3.5439	3.9333	3.3889	1.224	
	(s.d.)	.8929	.8112	.8398	.5963	.2509	.305	
전송위험	mean	2.8400	3.4231	2.7632	3.4000	2.1667	1.830	
	(s.d.)	1.1404	.9094	1.0638	1.1402	1.2910	.128	

a: p<.01, b: p<.05, c: p<.10인 경우에 유의적임,
MRT: 집단간 유의적인 차이 관계를 제시(Tukey 방식을 적용), 로마자는 집단간 차이 표시임
(1)물리적 인도, (2)온라인 전송, (3)직접방문을 통한 개발 등의 인도, (4)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다운로드 등을 통한 인도, (5)기타

(4) 결제방법에 따른 수출위험 인식수준

결제방법에 따른 수출위험 인식수준을 알아본 결과, 계약위험, 법률위험은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집단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송위험은 유의수준 10%에서 각각 집단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위험은 결제방식이 단순송금방식인 경우에 위험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률위험과 전송위험은 혼합식 결제방법인 경우에 위험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전반적인 수출위험의 인식수준은 무신용장방식, 단순송금방식 등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도방법에 따라 상당부분의 수출위험인식수준이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기업의 수출위험인식수준은 수출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H2-4]는 채택되었다.

〈표 4-11〉 결제방법에 따른 수출위험 인식수준

결제방법		(1)	(2)	(3)	(4)	(5)	F-ratio	MRT
인식수준		(n=34)	(n=8)	(n=27)	(n=30)	(n=13)	p-value	
지적재산권위험	mean	4.3333	4.4167	4.4074	4.4556	4.3077	.159	
	(s.d.)	.8876	.8116	.6624	.6158	.5686	.958	
계약위험	mean	3.9510	2.5833	4.0247	3.9444	3.3590	10.093	II - I IIIIVa
	(s.d.)	.6623	.7715	.6333	.6729	.5175	.000a	I IIIIV - Vb
법률위험	mean	3.3725	2.3750	3.4815	3.7667	3.1795	5.462	I - IIb
	(s.d.)	.8278	.9161	.8490	.7173	.4833	.000a	II - IIIIVa
전송위험	mean	2.8382	1.8750	2.8704	3.0833	3.0769	2.064	II - IVb
	(s.d.)	1.1127	1.2174	1.2215	.8518	1.1875	.091c	

a: p<.01, b: p<.05, c: p<.10인 경우에 유의적임,

MRT: 집단간 유의적인 차이 관계를 제시(Tukey 방식을 적용), 로마자는 집단간 차이 표시임

(1)신용장(L/C) 방식, (2)무신용장 주심결제방식(D/A, D/P), (3)단순송금방식, (4)상기 방식들의 혼합, (5)기타

3) 수출품목 특성에 따른 수출위험 인식수준

수출품목 특성에 따른 수출위험 인식수준을 알아본 결과, 지적재산권 위험은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산권 위험은 디지털콘텐츠를 취급하는 기업이 다른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위험과 환위험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를 취급하는 기업이 다른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위험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제품보다 디지털콘텐츠를 수출하는 기업이 위조, 변조, 불법유통 등에 취약하다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전반적인 결과를 판단한 결과 지적재산권위험을 제외한 기타의 위험인식수준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수출위험인식수준은 수출품목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H3]은 기각되었다.

<표 4-12> 수출품목에 따른 수출위험 인식수준

수출품목		소프트웨어 (n=64)	디지털콘텐츠 (n=25)	디지털서비스 (n=23)	F-ratio p-value	MRT
지적재산권위험	mean	4.3333	4.8533	4.0290	9.596	II- I IIIa
	(s.d.)	.6693	.4418	.8463	.000a	
계약위험	mean	3.7813	3.8000	3.8551	.080	
	(s.d.)	.6485	.9379	.8216	.923	
법률위험	mean	3.4323	3.2533	3.5217	.658	
	(s.d.)	.8742	.7594	.8338	.520	
전송위험	mean	3.0000	2.5800	2.8261	1.307	
	(s.d.)	1.1127	1.0376	1.1833	.275	

a: p<.01, b: p<.05, c: p<.10인 경우에 유의적임,
MRT: 집단간 유의적인 차이 관계를 제시(Tukey 방식을 적용), 로마자는 집단간 차이 표시임

5. 가설검증의 종합적 분석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재화 수출기업의 수출위험인식수준은 기업특성의 경우 기업규모와 수출경력 등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특성에 있어서는 체결되는 계약의 종류와 사용하는 대금결제방법의 경우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수출방법과 인도방법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마지막으로 품목특성에 있어서는 수출하는 품목에 따라 수출위험인식수준에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설검증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4-13>과 같다.

<표 4-13> 가설검증의 종합적 분석

특성	번호	가설내용	가설검증
기업 특성	H1-1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수출위험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 것이다.	채택
	H1-2	수출경력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수출위험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 것이다.	채택
거래 특성	H2-1	수출위험인식수준은 선택하는 수출방법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보일 것이다.	기각
	H2-2	수출위험인식수준은 체결되는 계약의 종류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보일 것이다.	채택
	H2-3	수출위험인식수준은 계약물품의 인도방법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보일 것이다.	기각
	H2-4	수출위험인식수준은 수출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보일 것이다.	채택
품목 특성	H3	기업의 수출위험인식수준은 수출품목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보일 것이다.	기각

V. 결 론

앞서 설명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디지털재화의 수출에 있어서 수출위험인식수준은 기업의 규모가 크고 수출경험이 풍부할수록 수출위험에 대한 인식수준도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디지털재화의 수출기업이 대부분 종업원 수 11-50명 이하의 중소기업임을 감안하여 볼 때 이들 기업은 현실적으로 수출위험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수출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수출위험에 대한 인식수준이 부족할 경우 수출과정에서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손실의 발생은 수출성과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수출성과가 감소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에 관한 전담부서를 운영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디지털재화의 수출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지적재산권위험과 계약위험은 디지털재화 수출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위험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적재산권위험은 수출기업들이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위험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재화의 수출기업은 디지털재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해 이들 위험에 대한 인식은 많이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외에 적절한 위험관리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현재 수출보험공사에서 지식서비스수출보험과 같은 상품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보험은 단순히 일회성 손실보상에 그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계약위반을 통해 불법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한 2차, 3차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피해는 해당 국가에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나 해당국가의 지적재산권 준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경우 승소가 쉽지 않고, 소송기간 또한 상당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수출기업들은 지적재산권침해의 방지와 관련한 기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지만 유관기관의 지원 없이 개별 수출기업이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협정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제도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수출방법에 있어서는 직접수출의 경우 전반적인 수출위험인식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대금결제방법에 있어서는 신용장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출위험인식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직접수출방식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수출위험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직접수출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간접수출을 선택하는 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출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기존의 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금결제방법에 있어서 신용장방식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수출위험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디지털재화의 수출위험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유효한 위험관리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기업들이 위험의 발생을 통한 손실을 예

방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으로 신용장방식과 같은 대금결제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재화의 수출기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수출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을 개발하여 신용장방식 뿐만 아니라 단순송금방식이나 여러 형태의 대금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디지털재화의 수출위험분류 및 정의와 관련하여 국내에 이러한 종류의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은 그 성격이 탐색적 연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디지털재화의 정확한 문제점이라고 일반화시키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국내에 디지털재화를 수출하고 있는 기업의 전체 표본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112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디지털재화 수출기업 전체에 적용시키는데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수출위험의 인식수준을 측정하는 변수와 관련하여 주로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는 설문이 제시됨으로써 개별기업의 관련 행위들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측정시점에서 응답자의 직위, 인지상황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좀 더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먼저 관측할 수 있는 기업의 표본 수가 확대되어야 하며 측정변수를 좀 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재설정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구종순, "수출위험의 확정에 관한 연구", 「경영논총」 제VII호, 충남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1992.
- 박문서, "디지털상품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통상정보연구」 제3권 제2호, 2005.
- 안병수, "디지털물 국제거래의 리스크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Digital Goods의 국제거래, 무엇이 문제인가?」, (사)한국무역상무학회 산학협력 공개세미나, 2005.12.
- 이제현, "한국수출기업의 수출위험관리와 수출보험활용에 관한 실증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7.
- 임성철, "디지털물의 국제거래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원, 2005.

- 한병완,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거래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5권 제3호, 2005.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해외 디지털콘텐츠 피해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결과 보고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6.
- Bilkey, Warren J., and Tesar, George, "The Export Behavior of Small-Sized Wisconsin Manufacturing Firm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977.
- Christensen, Carl H., Angela da Rocha and Rosane Kerbel Gertner,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Factors Influencing Exporting Success of Brazilian Firm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987.
- Copper, Robert G., and Kleinschmidt, Elko J., "The Impact of Export Strategy on Export Sales Perform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spring, 1985.
- Tesar, G, "Emperical Study of Export Operations Among Small and Medium Sized Manufacturing Firms",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1975.